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초연금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이 수급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안 제13조의2제4항 개정)
- 나.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의 간주 신청에 대한 조사 시 기존에 보유중인 인적·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제6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그 사람에 대한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있는 날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6항의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 ③ (생략) ④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제13조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u> ⑤ (생략) 제15조(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3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그 사람에 대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있는 날에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u>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u>

부 칙 <신 설>	<u>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u> 부 칙 <u>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u>제2조(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5조제6항의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연 락 처	(044) 202 - 3671